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3(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·분할납부 신청 등) ① 영 제28조의4 제4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,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에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영 제28조의4제5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,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통지서로 한다.

③ 영 제28조의4제7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8서식의 통지서로 한다.

별지 제6호의6서식 부터 별지 제6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[] 징수유예
재활용부과금 [] 분할납부
[] 징수유예 기간 연장**

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7일
------	-----	---------

신청인 (납부자)	성명	생년월일	사업자등록번호
	주소	(전화번호:)	
	상호 또는 명칭		
	사업장 소재지		
	사업의 종류	종목	

재활용부과금의 내용				징수유예(기간 연장)를 받으려는 금액
연도(분기)	발행번호	납부기한	금액	

징수유예(기간 연장)를 받으려는 이유

징수유예(기간 연장)를 받으려는 기간

20 . . .부터 20 . . .까지

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				
횟수	연도(분기)	발행번호	분할납부 기한	분할납부 금액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,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

첨부서류	없 음	수수료 없 음
------	-----	------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

납부자	성명				
	주소				
	사업장 소재지				
	상호 또는 명칭				
재활용부과금의 내용					
연도(분기)	발행번호	납부기한	금액	미납 여부	
징수유예(기간 연장) 기간		20 . . .부터 20 . . .까지			
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					
횟수	연도(분기)	발행번호	분할납부기한	분할납부금액	미납 여부
징수유예(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기간 연장) 취소 금액 내용					
횟수	연도(분기)	발행번호	납부기한(분할납부기한)	금액(분할납부금액)	
징수유예 취소 사유					
귀하에게 제 호(20 . . .)로 승인한 징수유예(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기간 연장)를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8조의4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.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년 월 일					
한국환경공단 이사장			직인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① 영 제28조의4제4항에 따라 재 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, 분할납 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영 제28조제4 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에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신청서를 공단 에 제출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② 영 제28조의4제5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, 분할 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의 통지 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통지서 로 한다.
<u><신 설></u>	③ 영 제28조의4제7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취소 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8서식의 통지서로 한다.